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서울특별시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회신(서울시,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18311(2020.05.07.,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관련 질의")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과에서 우리 부로 “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 ” 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번호판 사전제작을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관청에 배정한 등록번호를 민원인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개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은 등록번호를 사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6조를 보면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 부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私人)에게 별도로 등록번호를 선택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인이 특정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국가가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공기호로 개인이 특정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번호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점(10개의 등록번호 중 1개는 선택가능), 특정 선호번호를 선점하기 위한 과당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황금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부정거래, SBS '17.9.8. 보도 참고)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 부여의 형평성을 위해 등록번호판을 사전 제작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 배정받은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